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92

발의연월일: 2021. 11. 12.

발 의 자:이종성·김영식·김용판

이종배 · 성일종 · 김예지

임이자 · 조명희 · 박성중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은 계속 지적 되어 왔음. 또한 부칙 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 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 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 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08조 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32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를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 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 원) ① -----전전년도 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건강보험 지출액의------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 -----해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 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08조는 2022 | <삭 제>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